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계약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안내

[서울강남우체국 공고 제2026-27호]

서울강남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경과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계약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5장(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우편업무 규정」 제9조(우편요금 등의 담보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국고귀속 대상 : 2개 업체, 총 100,000원(별첨자료 참조)**
2. **국고귀속 범위 :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경과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계약 담보보관금**
 (해지일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환급의 청구가 없는 담보보관금)
3. **국고귀속일 : 2026.12.16.(수)**
4. **공고(환급)기간 : 2026.11.13.(금) ~ 2026.12.13.(일)**
5. **공고장소 : 서울강남우체국 공중실**
 서울강남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135)
6. **환급장소(방법) : 서울강남우체국(계좌이체)**
7.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우편요금후납계약 해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다.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및 입금확인증 1부(분실 시, 분실사유서 1부)
 라. 계약업체 명의의 반환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마. 계약업체 대표의 신청이 아닌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필요
 1)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1부
 3)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1부
 바. 계약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 사망 등의 경우 기타 추가서류 필요
8. **문의처 : 서울강남우체국 우편영업과(02-2040-4014, 4012)**

2026. 11. 13.

서 울 강 남 우 체 국 장

국고귀속 대상

순번	보관금종류	계약업체명	담보보관금액(원)	보관금번호
1	담보보관금	㈜한국당*****엠디	50,000	38977
2	담보보관금	㈜아****이아일랜드	50,000	38644
2개 업체, 총 100,000원				